

2021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 업무안내

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필요한
학사 및 학위논문 관련 정보를
모았습니다.

“ 수강신청

- ✓ 석사 학기당 9학점 이내, 박사 학기당 12학점 이내
(선수과목 수강의 경우 3학점 추가하여 수강신청 가능)
※ 수강신청시 졸업자가진단을 확인하고 진행. (2021.1학기부터 적용)
※ 졸업자가진단 확인사항: 동일교수 이수학점, 타전공 이수학점, 타대학원 이수학점,
초과수료 학점, 연구윤리 이수여부(수료학점 표 참고)
※ 연구윤리는 재학중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
- ✓ 수업 1/4선 이후에는 수강취소를 제외한 수강신청 사항 오류 등
일체 정정불가
- ✓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, 복학 절차를 이행하지
않은 경우 수강신청 자동무효 처리
- ✓ 동일 교과목과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중복이수는 허용되지
않음.
- ✓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경우 이미 이수한
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

“ 수료학점

절대평가 (충남대학교학칙 제31조,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8조의 2)

구분	석사	박사	석·박사 통합	비고
수료 학점	24학점	36학점	60학점	전공 학점 취득
① 다른 대학원	9학점	12학점	21학점	- 학점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점은 수료학점 인정 불가 -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①+②+③은 총 수료학점의 1/2이내에서 인정
② 다른 전공	2017년 이전입학자	9학점	15학점	
	2018년 입학자부터	12학점	18학점	
③ 前 학위(본교) 초과수료학점 인정	6학점	6학점		
동일교수	12학점	18학점	30학점	
연구윤리	P	P	P	필수이수 과목

- ✓ 타 대학원 취득학점과 타 전공 취득학점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
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✓ 다른 대학원 수강학점은 동일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
(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특수대학원 수업 수강 불가, 석사과정 수료학기는 교육대학원
수강 신청 불가)
- ✓ 총 성적평점평균 3.0 이상 취득하여야 함.

※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(수료학점)

- ① 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
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취득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
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.
- ②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
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
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③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“ 졸업자가진단

- ✓ 졸업자가진단 학기
: 예비 수료사정을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에 실시하여 수료여부를 확인
(CNU포털 - 졸업관리 - 학생정보관리 - 졸업자가진단)

“ 성적평가

절대평가 (충남대학교학칙 제31조,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8조의 2)

- ✓ 대학원은 C⁰ 이상을 급제점으로 인정함.

등급	실점	평점	등급	실점	평점
A ⁺	95 ~ 100	4.5	C ⁺	75 ~ 79	2.5
A ⁰	90 ~ 94	4.0	C ⁰	70 ~ 74	2.0
B ⁺	85 ~ 89	3.5	D ⁺	65 ~ 69	1.5
B ⁰	80 ~ 84	3.0	D ⁰	60 ~ 64	1.0
			F	60점 미만	

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
과정	수업연한	재학연한	비고
석사	2년	3년	충남대학교 학칙 제33조 (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
박사	2년	5년	
석·박사통합	4년	8년	

- ✓ 학·석사연계과정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
- ✓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.0이상인 자에
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

“ 휴·복학

<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(휴학), 제36조(복학)> 종합민원센터 821-5034

- ✓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
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- ✓ 휴학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, 통산 4개학기(석·박통합과정은
7개학기)를 초과할 수 없다.
- ✓ 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, 사유 종료시(한학기 이후) 복학 가능
- ✓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 가능
- ✓ 모든 휴학은 자동연장 불가
(단, 공무 휴학자는 1년 단위로 휴학신청서를 학과에 제출)
- ✓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생 수강신청:
복학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서를
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후 학과 제출